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감사규정 개정(안)

부당한 감사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및 공정심의를 위한 재심의회를 신설하고자 「감사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시행일 :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

붙임 : 1. 감사규정 개정 (안)

2. 감사규정 개정 후 전문 (안). 끝.

★감사역 이혁제 실장 신용호 이사장 05/02
한종관 韓

협조자

감사실장

감사실

감사번호

시행 감사실-231 (2019.05.02.) 접수 ()
우 04130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 163 (공덕동)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02)2174-5051 /전송 02)3278-8111 / redcarpet@seoulshinbo.co.kr / 공개